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6156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피고가 2020. 5. 7. 원고 A에게 한 취득세 33,156,0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924,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B에게 한 취득세 22,104,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9,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C에게 한 취득세

1) 원고는 소장에 피고를 '[redacted]구청장'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22,104,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9,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원고 D에게 한 취득세 22,104,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9,6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E(2018. 1.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5. 9. 25.부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F의 1971. 3. 29. 설립 당시 발행주식 총수는 5,000주(1주의 금액 1,000원)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유상증자 되어 1980. 6. 9.에는 발행주식 총수가 150,000주로 변경되었다. 이후 1987. 9. 16. 주식병합으로 F의 발행주식 총수는 30,000주(1주의 금액 5,000원)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1985. 9. 25. F의 주식을 인수하여 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1985. 12. 31.자 주주명부상 총 30,000주의 주식 중 2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라. 망인의 F 주식 중 1986. 8. 1. 2,000주와 1993. 4. 20. 5,000주가 각 G에게, 1991.

2)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임이 명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8. 31. 3,000주가 H에게 각 이전되어, G은 1986. 12. 31.자 주주명부상 주식 2,000주(망인의 주식 23,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H은 1991. 12. 31.자 주주명부상 주식 3,000주(망인의 주식 20,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G은 1993. 12. 31.자 주주명부상 주식 7,000주(기보유 2,000주 + 신규취득 5,000주, 망인의 주식 15,0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었다(이하 G, H이 보유한 F 주식 1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마. 망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합25303호로 G과 H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망인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12.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4.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바. 이 사건 판결 후 2015. 12. 31.자 주주명부상 망인이 F의 주식 25,000주를 다시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판결 확정일인 2015. 4. 4. G, H으로부터 F 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망인의 F 주식 지분이 50%에서 83%로 증가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망인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고, 망인이 납부할 세액은 취득세 99,468,0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773,170원(가산세 포함)이라고 보아, 2020. 5. 7.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A(상속지분 3/9)에게는 취득세 33,156,0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924,37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 B, C D(상속지분 각 2/9)에게는 각 취득세 22,104,0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949,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주식은 망인이 F의 직원들인 G, H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가 G, H을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망인이 보유한 F의 주식 지분은 이 사건 판결로 인해 실질적으로 증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G, H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15. 4. 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의를 망인 명의로 회복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이 2015. 4. 4. 이 사건 판결로써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가) G은 2014. 4. 3. 망인에게 'F의 주식 7,000주(1986. 8. 1. 양수 2,000주, 1993. 4. 20. 양수 5,000주)에 대해 망인으로부터 주식명의신탁을 제안 받아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주식 명의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자금이 출자된 사실은 없으며 본인 명의의 F 주식 7,000주(35,000,000원)의 실제 소유자는 망인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본인이 2014. 9.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나) H은 2014. 4. 3. 망인에게 F의 주식 3,000주(1991. 7. 31. 양수, 15,000,000원)에 대해 위 가)항과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본인이 2014. 8.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G과 H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이후 F의 이사로 등재된 바 없고(주주명부상 다른 주주인 I, J은 이사와 감사로 등재되었다), G과 H이 F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라) 망인은 위 가), 나)항 기재 각 확인서를 증거로 첨부하여 G과 H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G은 2020. 3. 12. 원고들에게, '본인은 1970. 12. 7.경 F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 중 7,000주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었다. 위 7,000주는 망인의 돈으로 인수하였고 본인은 주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2014. 4. 3. 망인에게 명의신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망인이 제기한 주주권확인 소송에서는 위 7,000주가 명의신탁된 것이 사실이므로 응소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바) 증인 H은 '1980년 F에 입사하여 2007년까지 27년간 F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은 사실이며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취득할 때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증인이 F의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망인에게 주식을 이전하여 주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사) G과 H이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G과 H의 진술 내용(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실제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행사하며 F를 지배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H이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000주를 이전하여 줄 당시 수령하였다는 150만 원은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주식양도대금이라기 보다는 망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준 대가 또는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판결로써 망인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전제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별지]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6. 1. 대통령령 제2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9-08

● 구 지방세기본법(2015. 5. 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